※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과 제 20219호(2007.12.05)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서울 창동 동도센트리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45번지외 5필지
- 대지면적 : 3,786.60㎡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15~17층 아파트 2개동 총 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구 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 수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1840-01	2008000293(01)	102.493	79.389	23.104	102.493	51.232	153.725	40.66	28	15층
	21840-02	2008000293(02)	102.650	80.722	21.928	102.650	52.092	154.742	41.35	32	17층
	21840-03	2008000293(03)	102.522	80.822	21.700	102.522	52.157	154.679	41.40	32	17층

(면적단위:㎡, 금액단위:천원)

주택형	해당동	층별구분	향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 금 (30%)
								1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08.07.15	'08.10.15	'09.01.16	'09.03.15	'09.06.15	'09.09.15	입주시
102.493	102	2층	동향	2	144,824	176,076	320,900	32,090	32,090	32,090	32,090	32,090	32,090	32,090	96,270
		기준층		24	144,824	193,676	338,500	33,850	33,850	33,850	33,850	33,850	33,850	33,850	101,550
		최상층		2	144,824	204,176	349,000	34,900	34,900	34,900	34,900	34,900	34,900	34,900	104,700
102.650	101	2층	남서향	2	148,212	178,388	326,600	32,660	32,660	32,660	32,660	32,660	32,660	32,660	97,980
		기준층		28	148,212	196,188	344,400	34,440	34,440	34,440	34,440	34,440	34,440	34,440	103,320
		최상층		2	148,212	206,988	355,200	35,520	35,520	35,520	35,520	35,520	35,520	35,520	106,560
102.522		2층	남향	1	145,979	175,321	321,300	32,130	32,130	32,130	32,130	32,130	32,130	32,130	96,390
		기준층		14	145,979	192,921	338,900	33,890	33,890	33,890	33,890	33,890	33,890	33,890	101,670
		최상층		1	145,979	203,421	349,40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34,940	104,820
		2층	서향	1	143,308	172,192	315,500	31,550	31,550	31,550	31,550	31,550	31,550	31,550	94,650
		기준층		14	143,308	189,392	332,70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33,270	99,810
		최상층		1	143,308	199,692	343,0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34,300	102,900

평형환산방법	102.493㎡	102.650㎡	102.522㎡
㎡ x 0.3025 또는 ㎡ ÷ 3.3058	(구)31평형	(구)31평형	(구)31평형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해 공급총액 범위내에서 당사가 적의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정산할 예정임(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기준).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2년9.6.부터 시행)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당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임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2002.9.5 이후 청약관련 예금 또는 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는 가능) 됨.
※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2002년9월6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 권전매제한(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 분은 1순위 청약 제한(2순위는 가능)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 모바일 청약 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구,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 1,2순위: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주택청약신청
	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 제6항(3세대)]

주택형	102.493㎡	102.650㎡	102.522㎡	합계
공급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	3세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03.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 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92세대 중 3%인 3세대(주택형: 102.493㎡-1세대, 102.650㎡-1세대, 102.522㎡-1세대)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으로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 순위 배점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순으로 공급함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 신청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 3. 18.(화) (10:00~15:0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3. 18.(화) 16: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3자녀 특별공급시 배점 기준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비치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3.13.)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기재)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증·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3.13.)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 순위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공통	*가점제: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 에 속한 분 *추첨제: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 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는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및 경기도	2008.3.19 (수)	*접수장소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모바일: 아래의 청약신청 안내 참조 *접수시간 08:30 ~ 18:00	*발표일시: 2008.3.27.(목) *발표: 당사 견본주택 및 2008년 3월 27일(목) 파이낸셜 신문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이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1980.8.29.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85㎡초과 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2순위	공통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3.20 (목)		
		85㎡이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전주택형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8.3.21 (금)	-국민은행 인터넷/KB모바일 -접수시간: 08:30~18: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09:30~16:30]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 에 의한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재원(www.apr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가점 항목별 적용 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 감점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청약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소유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 3개월 이내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 보유 특례)
1. (현재: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 (현재: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면적 변경이 가능해야,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함.
•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 면적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마다 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면적만 신청가능(단, 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면적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접수 방법

• 공통: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각 지역별,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50%를 가점자에게 우선공급하고 50%를 추첨제에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국민은행 비치) • 청약예금, 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실세대 구성시: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 구성시: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함) -청약자의 임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 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창구 청약자에 한함)
청약신청금	100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08.3.28.)이후 평일 09:30~16:30(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구비서류 :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②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제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단, 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정계좌로 이체신청을 통해 입금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통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초과: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도 별도 공고함

■ 발코니 확장금액

(금액단위:원)

주택형	확장부위	세대당금액 (VAT포함)
102,49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3,900,000
102,650㎡	거실(2면) + 주방 + 침실 1 + 침실2 + 침실3	₩13,500,000
102,52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3,900,000

• 확장부위는 PL이중창이 시공되며, 미확장부위 발코니는 발코니 전용창이 시공됨(16㎜복층유리)
• 102.493㎡는 침실1(붙박이장), 침실2(붙박이장), 침실3(발코니 선반), 비데(부부욕실), 식기세척기, 야채세척기, 주방발코니 보조주방 설치 포함
• 102.650㎡는 침실1(붙박이장), 침실2(붙박이장), 비데(부부욕실), 식기세척기, 야채세척기, 주방발코니 보조주방 설치 포함
• 102.522㎡는 침실1(붙박이장), 침실2(붙박이장), 침실2(발코니 선반), 비데(부부욕실), 식기세척기, 야채세척기, 주방발코니 보조주방 설치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개정)
• 상기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4.1.(화) ~ 2008.4.3.(목) (3일간, 시간:10:0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계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117137-01-000754	동도디앤씨(주)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필히 기재요망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서류
공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계약금(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1·2·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재원에 5년이내 재당첨여부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건설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닌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적용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09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금융결재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청약센터 → 당첨조회
	이용기간	2008.3.27 ~ 2008.4.5(10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번호:701)	☎ 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08.3.27 ~ 2008.4.5(10일간)	
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M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2008.3.27 ~ 2008.4.5(10일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국민은행 주택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이용기간	▶2008.3.27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유의사항

• 창구 청약자께서는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의 홍보내용(모형도,조감도등)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전에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이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도봉구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는 전체동이 필로티로 시공되는 관계로 1층이 없어 보육시설 허가가 불가함(놀이방, 어린이집 등).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당 사업은 주택성능등급제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발코니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 위치, 벽체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발코니 확장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실태 조사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당 사업부지 남서측의 기부체납부지는 추후 도봉구에서 공공용도의 시설물 설치로 활용예정임
• 당 사업부지는 경원선과 근접하여 있으므로 철도 관련 공사 및 열차 운행 등에 의한 소음, 진동, 이물질 유입, 전자파, 전자기 장애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통신감리	비고
회사명	(주)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우이엔지	(주)서광전기컨설팅	
금액(VAT포함)	₩238,392,910	₩22,000,000	₩19,800,000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 내용 : 보증서 번호 제 01222007 - 101 - 0011700호(용지번호 제 005737호, 일금 이백일십팔억사천일백오십사만원정(₩21,841,540,000)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채무의 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 사항
가.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 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아파트의 경우 전체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 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 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 13.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나. 보증회사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동도디앤씨(주)	동도건설(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18-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등록번호	서울-주택2004-0295	서울-주택1993-0011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25,70번지 (TEL 02-990-27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990-2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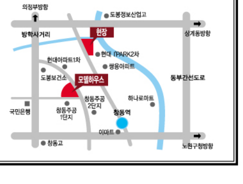시행 동도디앤씨(주) 시공 동도건설(주)